[서식 예] 약속어음금청구의 소(발행인 및 배서인2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- 2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- 3. 박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・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약속어음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부 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- 1. 피고 김◇◇는 20○○. ○. ○. 액면 금 ○○○만원, 지급기일 20○○. ○○. ○, 지급지 및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, 지급장소 ○○은행 ○○지점, 수취인 피고 이◇◇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·교부하고, 피고 이◇◇는 위 발행일과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피고 박◇◇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・양도하였으며, 피고 박◇◇는 원고에게 20○○. ○.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・양도하였으며, 피고 박◇◇는 원고에게 20○○. ○. 지급거절증 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・양도하여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위 약속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습니다.
- 2.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습니다.
- 3.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

약속어음앞면, 뒷면

1. 갑 제2호증

부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3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	T	1	,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조멸시효일람표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	수만큼의 부본	제출
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비 용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 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7 1 2	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		
	여야 하는데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, 제38조 제1항),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		
	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		
	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(대법원 1992. 2.		
기 타	28. 선고 91다42579 판결),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		
	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		
	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(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71다1070 판결).		
	·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		
	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, 제39조 제1항). 어음은 제시		
	증권, 상환증권이므로(어음법 제38조, 제39조)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		
	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,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		
	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		
	피·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,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		
	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		
	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,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(대법		
	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결).		
	·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%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		
	청구할 수 있음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, 제48조 제1항 제2호).		
	·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		
	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,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		
	라 '지급을 위하여' 또는 '지급확보를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, 채무자		
	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'은행도 어음'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		
	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		
	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,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		
	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		
	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		
	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		
	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,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		
	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		
	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(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다57771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어음 ·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^{\$}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